

2024년 산업안전보건정책



순 서

- 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11. 산업안전보건점검
- Ⅲ. 안전문화 확산
- Ⅳ.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V.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소기업, 건설 제조업, 원 하청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다수 발생

구조 소규모·하청사업장, 건설·제조업 위주 발생





형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다수



분포 개발사고 빈번, 취약계층에서 사고 다발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예방과재발방지를위한 핵심수단으로위험성평가개편 •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 위한 감독행정, 법령·기준정비



②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50인미만80.9%

중소기업 집중지원 건설·제조72.6%

스마트기술·장비 중점지원 추락·끼임·부딪힘 62.6%

8대 요인 현장중심 특별관리 하청40%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MID으이허

산업구조 및 기후변화 대비

③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
- 안전문화캠페인확산(중앙-지역-업종)
- 현장 중심 안전보건교육 강화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전문기관간 연계 협업
- 응급의료비상상황대응체계
- 중앙-지역 협업·거버넌스

II. 산업안전보건점검

고위험 사업장 선정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예측·선정

- 공정관리 대상 사업장,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등 다양한 사업장 목록 조합
- 산업안전보건 기초자료[위험기계 보유 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분석



전국 84,000개소, 경남 9,100개소



점검 대상으로 우선 고려

고위험 사업장 선정

고위험 사업장 # 불량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점검 개요



일반감독·점검

- 건설업 감독
 기획감독
- ③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 ④ 연계감독

특별감독

- ① 동시 2명 이상 사망
- ② 1년간 3명 이상 사망
- ③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행정 사법 조치

-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 2. 위험성 평가
- 3. 안전보건관리체제
- 4. 재발방지대책

-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 · 추락 비계¹ 지붕² 사다리³ 고소작업대⁴
 - · 끼임 방호장치 5 LOTO(Lock Out, Tag Out)6
 - · <mark>부딪힘</mark> 혼재작업 ⁷ 충돌방지장치⁸



2. 위험성 평가

- · 위험성평가는 실시하고 있나요?
- ·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있나요?
- · **아차사고**, **산업재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있나요?
- · 사업장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무엇인가요?
- ·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나요?
- · 위험성평가 <mark>결과를</mark> TBM, 안전교육 등을 통해 <mark>공유</mark>하나요?

3. 안전보건관리체제

- ·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업무수행
-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업무수행**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안전보건관리규정
- ·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 등

4. 재발방지대책

- · 산업재해 기록(재발방지 대책 포함)
- · 산업재해 발생보고

Ⅲ. 안전문화 확산

안전문화 확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

- 다양한 안전보건주체들의 참여·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조성
- '안전 절대 지켜!', '마이 세이프티 룰', '안(安)며들기' 캠페인 실시
-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 '다모임 멘토링' 등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 실시

지역별 안전보건포럼 운영

- 민간의 자발적 안전보건 활동 참여·노력을 이끌어내고 상호 노하우 공유 및 협력 등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정보공유, 공동학습, 세미나,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 강구

Ⅳ.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산업재해란?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기준 마련]

인과관계 명확성 (급성) 사업주의 피해의 심각성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

- ①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 물질, 금속가공유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1~13호)
- ② 랩토스피라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 (14~24호)

주요정의

종사자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 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주요정의



-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 * 예)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
- 형식상 직위·명칭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① 직무, ② 책임과 권한,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사업의 대표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 형식적으로 안전보건담당이사 등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관련 예산, 인력 조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경영 책임자

적용범위

적용 범위

- * 상시근로자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연인원) 어떠한 일이 완성된 기간 동안 하루하루 동원된 인원수를 모두 합산된 총 인원수
- (가동일수) 산정기간 동안 업무의 완성을 위해 인력 또는 장비 등을 투입한 일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조치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mark>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mark>

V.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내용

- ◆ **안전검사 대상 기계 확대** (제78조) 〈시행일: 2026.06.26.〉
- (신설)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기계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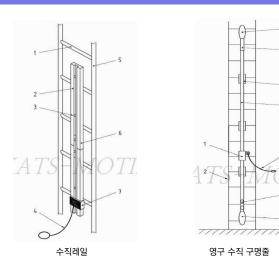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기간 정비** (제203조) 〈시행일: 2025.1.1.〉
- (기존) 다른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면제
- (개정)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염화비닐 사염화탄소,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아크릴로니트릴을 제외한 모든 유해인자는 면제 기간이 12개월로 연장

- ◆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보완** (제24조) 〈시행일: 2024.6.28.〉
- (기존)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일 경우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 (개정)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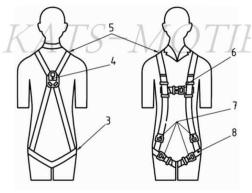


a) 일체형 구조 장비가 없는 자체감김 구명줄 b) 일체형 구조 장비가 있는 자체감김 구명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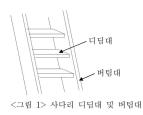


임시 수직 구명줄



전신 안전대

-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제42조) 〈시행일: 2024.6.28.〉
 - (신설)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가능



-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제42조) 〈시행일: 2024.6.28.〉
-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 나. <mark>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mark>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다. 이동식 사다리를 <mark>다른 근로자가 지지</mark>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 5. 이동식 사다리의 <mark>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mark>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제87조) 〈시행일: 2025.6.29.〉
 - (기존)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분쇄기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또는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 ◆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제87조) 〈시행일: 2025.6.29.〉
- (개정) 기존 조치와 더불어 분쇄기등의 가동 중 <mark>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mark> 아래 중 하나 이상을 조치
 - ①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 ②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 ③ 분쇄기등에 <mark>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mark>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 ◆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제130조) 〈시행일: 2024.12.29.〉
- (기존)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제130조) 〈시행일: 2024.12.29.〉
- (신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치
 - ①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
 - ② <mark>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mark>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 ③ 기계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mark>버튼을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mark>에만 <mark>운반기계가 작동</mark>하도록 기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 (제147조) 〈시행일: 2024.6.28.〉
- (기존)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
- (개정)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

- ◆ **구내운반차 안전조치 강화** (제184조) 〈시행일: 2025.6.29.〉
- (기존)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
 - ①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 ② 경음기를 갖출 것
 - ③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 ④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없어도 됨

- ◆ 구내운반차 안전조치 강화 (제184조) 〈시행일: 2025.6.29.〉
 - **(개정)** 준수사항 추가
 - ⑤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mark>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mark>할 것

- ◆ **안전밸브 검사 주기 정비** (제261조) 〈시행일: 2024.6.28.〉
- (기존)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아래와 같음
 - ①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 ②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 ③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 ◆ **안전밸브 검사 주기 정비** (제261조) 〈시행일: 2024.6.28.〉
- (개정)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아래와 같음
 - ①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 ②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 ③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 ◆ **아세틸렌 용접장치 소화설비 기준 정비** (제290조) 〈시행일: 2024.6.28.〉
 - (기존) 아셀틸렌 용접장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 (개정) 아셀틸렌 용접장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 ◆ **가스집합 용접장치 소화설비 기준 정비** (제295조) 〈시행일: 2024.6.28.〉
- (기존)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 (개정) 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 ◆ **청력보존 프로그램** (제517조) 〈시행일: 2024.6.28.〉
- (기존) 아래의 경우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작성
 -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1일 노출시간(hr)	소음강도 dB(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 ◆ **청력보존 프로그램** (제517조) 〈시행일: 2024.6.28.〉
- (개정) 아래의 경우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작성
 - ①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 ②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 · 소음작업: 1일 8시간 기준 85dB 이상의 소음 발생
- · 충격소음작업: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 120dB 초과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
- 130dB 초과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
- 140dB 초과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

강렬한 소음작업

-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
- 95dB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
-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 - 10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
- 110dB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
- 11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

- ◆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 기준 정비** (제619조의2) 〈시행일: 2024.6.28.〉
- (기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 **(개정)**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측정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제도 정비 (제657조) 〈시행일: 2024.6.28.〉
 - (기존) 수시 유해요인 조사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실시
 - (개정) 수시 유해요인 조사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실시

수시 유해요인 조사 사유

- ①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 받은 경우(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
- ②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를 도입한 경우
- ③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위험성평가에서 시작합니다.



☑ 고용노동부창원지청